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해산급여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지원 부적정

기 관 명 광주광역시 서구, 북구, 광산구

내 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 및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르면 해산급여는 1인당 60만원(2013년은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는 해산급여를 기 지원받은 ○○○에게 아래 [표 1]과 같이 해산급여를 중복하여 지급하였다.

[표 1] 해산급여 중복 지급 현황

<단위 : 원>

산모	생년월일	해산일	자치구	해산급여		비 고
				지급일	금액	
○○○	1900.00.00.	2000.00.00.	동구	2014. 10. 08.	600,000	시설수급자 (미혼모시설 ‘○○○’)
			북구	2014. 10. 16.	600,000	일반수급자

또한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안내」에 따라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층 산모에 대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초수급 자격을 가진 산모에 대해서는 해산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동일인에게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와 해산급여를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와 해산급여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수급자가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해산급여 포기각서를 징구토록 하는 등 관련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상호 지원여부를 확인한 후 미지원자에 한해 산모도우미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해산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서구, 광산구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타 사업에서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동일인에게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와 해산급여를 중복 지원하였다.

[표 2] 산모신생아 서비스 및 해산급여 중복 지급 현황

(단위: 원)

자치구	수혜자	생년월일	해산일	해산급여 지급일	해산급여 지급액	산모도우미 서비스시작일	산모신생아 서비스료	비고
서구	○○○	1900.00.00	2000.00.00	2000.00.00	600,000	2000.00.00	566,000	해산급여 포기각서 미징구
광산구	○○○	1900.00.00	2000.00.00	2000.00.00	600,000	2000.00.00	528,000	-

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은**

[시정] ○○○에게 중복 지급된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지원료 566,000원을 회수하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

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복구청장은

[시정] ○○○에게 중복 지급된 해산급여 600,000원을 회수하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은

[시정] ○○○에게 중복 지급된 해산급여 600,000원을 회수하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